

#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·평가 계획

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

농림축산식품부 「민간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」에 따라 검역본부, 시·도 합동 「민간거점소독시설 지정·평가 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I 개요

- ◎ (배경) 농식품부 「민간거점 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」에 따른 중앙·지방 합동 평가 세부 계획 수립
- 거점 소독시설 지정 희망 축산시설의 소독시설 설치·운영사항, 소독 유효성 평가 세부 기준 마련
- \* 관련 :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361호(19.1.20)호

### 민간 거점소독시설 운영·평가 지침(요약)

- 신청대상: 5인 이상 상시근무 인력 보유한 가금 관련 도축장·사료공장·종축장·부화장
- 지정절차: ①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신청 → ② 관할 시·군 → ③ 관할 시·도 → ④ 검역본부 → ⑤ 중앙·지방 합동 평가[검역본부, 시·도 방역기관] → ⑥ 검역본부 최종 적부 판정 → ⑦ 관할 시·도 지정통보
- 지정기준: 기본사항(필수), 소독 시설기준·운영사항(40)·물리적 성능(30)·소독역 효력평가(30) 실시, 총점 90점이 상시 적합
- 사후관리: 반기별 1회 재평가, 정기 점검(검역본부 2주 1회·지자체 주 1회)

## II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

### 1 신청서 제출, 서류검토

- ◎ (신청서 제출) 가금 관련 축산시설의 소독시설 운영 책임자는 「민간거점소독시설 지정·평가 신청서(붙임1)」를 관할 시·군 방역부서에 제출
- 신청서 제출 시 소독시설 설치·운영 사항 및 관련 기록이 포함된 '소독시설 운영계획서'와 시설 운영 관련 기록 사본을 첨부

\* 소독시설 운영계획서 기재사항 및 운영 기록 사본 목록은 붙임 2 참조

○ 시·군 방역부서에서는 신청서를 관할 시·도 방역부서에 제출

◎ (서류 검토) 시·도 방역부서에서는 신청서 및 소독시설 운영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합 판단 시 검역본부에 송부

○ 시·도 방역부서는 필요 시 해당시설 자체 사전평가 및 기술지원 실시

○ 검역본부는 서류검토 후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업체에 보완 조치하고, 보완 전까지 현장평가 보류

## 2 현장 평가

◎ (평가반) 검역본부 2명, 관할 시·도 동물위생시험소 1명 이상으로 구성

○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평가반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

\* 검역본부 2명 : 방역감사과1,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1

◎ (사전준비) 검역본부는 관할 시·도와 평가일정 협의 후 해당 업체에 평가일자 및 시연차량 등 준비물 통보

<주요 준비물>

구분	항목	비고
평가반	·방역복 등 방역용품, 카메라, 봉인지	검역본부 준비
축산시설 (신청업체)	· 축산차량 (5톤 트럭 1대, 1톤 트럭 1대)	물리적 성능 평가물품
	· 감수지, 페트리디쉬, 자석, 양면테이프	
	· 소독액 채취용 갈색 용기, 보냉박스	소독액 효력 평가물품

◎ (평가 내용) 기본사항, 시설·운영, 소독 유효성 등 3개 사항 평가

구분	배점(점)	주요 평가항목	결과 판정
① 기본사항	-	· 운영책임자 지정, 근무인력(2인 이상) · 소독액 적정 희석배수 준수 여부 등	적합/부적합
② 소독시설 및 운영	40	· 세척소독시설, CCTV 등 설치 및 운영 적정성 · 소독대상 차량 유기를 완벽 제거 여부 · 도축장은 어리장 세척소독사항 포함 · 세차장, 소독시설 내 이물질 잔류 여부 등	항목별 배점 부여
③ 소독 유효성	30	· 감수지 활용 물리적 성능 평가	적합/부적합
	30	· 소독액 효력(소독액 희석배수) 평가	적합/부적합 (검사기관 검사)

\*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준 : 붙임 3 민간거점소독시설 지정 합동 평가표 참조

- (기본사항) 평가 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현장평가를 종료하고 부적합 처리
- (시설·운영) 시설기준 20점, 운영사항 20점 등 총 40점 배점하며, 세부항목별 채점 후 최종 점수 산출

\*평가받은 현장평가 시 주요 시설 및 운영 현장사진 촬영 등 기록 유지

- (유효성) 물리적 성능 평가 30점, 소독액 희석배수 검사 30점 등 총 60점 배점하며, 항목별 적합(30점)/부적합(0점) 판정
  - 물리적 성능 평가 : 차량 2대(5톤·1톤)에 감수지 부착·소독 시연 후 감수지 색도 변화 판독 결과에 따라 판정

(적합기준) 모든 감수지는 70% 이상 색도변화 또는 흡착되어야 함. 다만, 차체하부와 바퀴 부근에 부착된 감수지는 모두 99% 이상 색도변화 또는 흡착되어야 함

- 소독액 효력평가 : 검사기관의 희석배수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

(적합기준) 축산시설별 소독액 희석배수 기준에 부합  
 - 일반소독 희석배수 : 사료공장·부화장, 유기물소독 희석배수 : 도축장·종축장

\*검사기관에서는 「동물의약품공정서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)」에 따라 검사 실시

### 3 결과 판정 및 통보

- ◎ (결과 판정) 3개 평가 사항별 결과(점수)를 합산하여 적합 여부 판정

- ① 적합 : 기본사항 요건충족 및 운영·효력 평가 결과 90점 이상
- ② 보완 : 기본사항 요건충족 및 운영·효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
  - 시설 보완 후 신청하여 재시험 후 평가결과 반영
- ③ 불인정 : 기본사항 요건충족 및 운영·효력 평가 결과 80점 미만
  - 시설 보완 후 1개월 이후 재신청

- ◎ (결과 통보) 검역본부는 적부 판정결과를 관할 시·도에 통보
- 적합 판정인 경우 관할 시·도는 해당 시설을 민간거점소독시설로 지정하고, 관련 기관·협회 등에 지정 사항 통보

#### 4 사후관리

- ◎ (정기 점검) 지자체 및 검역본부는 민간거점소독시설의 기본사항, 소독시설 및 운영사항을 정기 점검(검역본부 2주 1회, 지자체 주 1회)
- 점검결과 미흡사항 확인 시 관할 시·도에 통보하고, 관할 시·도는 중요도에 따라 지정 정지 또는 취소
  
- ◎ (재평가) 민간거점소독시설로 지정받은 축산시설은 반기별 1회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, 평가결과 80점 이하인 경우 지정 취소
- 재평가 절차, 평가사항은 최초 지정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

### III 향후 추진계획

- ◎ 검역본부, 시·도 방역관 대상 사전 교육 실시(3월 중)
- (교육내용) 현장평가 요령, 소독약 작용 기전, 소독액 효능평가 사례, 감수지 판독 요령, 현장 견학 등
  - 강사 : 외부전문가 및 검역본부 관계관

※ 자세한 사항(붙임자료 등)은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